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30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기획조정실장)
- 제출일자: 2020. 10. 16.
- 회부일자: 2020. 10. 16.
- 상정 및 의결: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(2020. 10. 30.)

2. 개정이유

- 조례 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 용어로 변경
 - 정비대상 용어(4개): 경질→변경, 망실→분실, 미연에→미리, 양양하다→드높이다
 - 정비대상 자치법규: 8개 조례, 11개 조문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련조례: 현행조례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동의
-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: 원안동의
- 입법예고(2020. 9. 11. ~ 10. 5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 이영규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,
- 정비대상 용어(4개) 경질→변경, 망설→분실, 미연에→미리, 양양하다→드높이다 / 정비대상 자치법규(8개 조례, 11개 조문)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